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강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22명(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4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4)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월 31일”을 “2023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10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재활원의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